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③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기재 보완

④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제한 삭제

⑤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2. 11. 16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9. 30. 기준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2. 10. 18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10.31. 기준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: <u>제 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 로 매입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: <u>제 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 로 <u>제 4(4)영업일</u> 에 지급	15 시 30 분 이전(경과후)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4(4)영업일</u> 에 지급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]	연혁 업데이트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 [채권] 〈신 설〉	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 [채권] <u>2022.06.30</u> - <u>자투자신탁 추가</u> <u>트러스톤 TDF2030 증권자투</u> <u>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40 증권자투</u> <u>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</u> <u>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</u> <u>트러스톤 TIF 안정형증권자투</u> <u>자신탁 [혼합-재간접형]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0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0. 31.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 권 모투자신탁 [채권] 2) 자산유동화증권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가) (생 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 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 권 모투자신탁 [채권] 2) 자산유동화증권 : <u>〈삭 제〉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 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 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

		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다) (생략) (2)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3) 자산유동화증권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	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다) (현행과 같음) (2)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3) 자산유동화증권 : <u>〈삭 제〉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2) 동일종목투자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2) 동일종목투자 : 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

		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 (2) <u>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u> 2) 동일종목투자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	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 (2) <u>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u> 2) 동일종목투자 : 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기재 보완	〈신 설〉	<u>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 <u>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</u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<u>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<u>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제한 삭제	3)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	〈삭 제〉

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4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: <u>제 2(3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: <u>2(3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시 30 분[오후 3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 2(3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4(4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시 30 분[오후 3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(3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(4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, 해당 클래스의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. <신 설>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4.19 ~ 2022.04.18] <신 설>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, 해당 클래스의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457,577 원입니다.</u>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4.19~2022.04.18] 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 증권 등</u>

	주식 번호 오기 정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주 5) (생략) 주 6) (생략) 〈신설〉	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.) 주 4) (현행과 같음) 주 5) (현행과 같음)) 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 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 며,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4.19~2022.04.18]
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9. 30. 기준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2. 10. 18. 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2. 10. 18. 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2022. 10. 18. 기준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0. 31 기준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0. 31 기준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 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 자)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업무 (생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

			<u>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의 확인업무</u>
5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사명 변경	<u>KIS 채권평가주식회사</u>	<u>KIS 자산평가주식회사</u>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 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 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 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 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 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 행령 제81조제3항제1호 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 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 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

		(2) ~ (3) (생략)	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생략) ⑧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

		사실 ⑩ (생 략)	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